
국가태풍센터 운영 특정감사 결과[안]

2014. 1.



기 상 청
감 사 담 당 관

목 차

I .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범위	1
3. 감사실시근거	1
4. 감사중점	1
5. 감사대상기관	1
6.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 일반현황	2
1. 조직 및 인력	2
2. 주요기능	2
3. 예산현황	2
III . 감사결과	3
1. 총 평	3
2. 주요 문제점	3
3. 처분요구 일람표	5
4. 처분요구서	6
5. 모범사례	16

1. 감사 목적

- 국가태풍센터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필요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2. 감사 범위

- 최근 3년간(2011~2013년) 국가태풍센터 업무 전반

3. 감사 실시 근거

- 기상청 자체감사규정(기상청 훈령 제691호, 2011. 5. 31.)
- 2013년도 자체감사운영 기본계획(감사담당관-916, 2013. 4. 3.)

4. 감사 중점

- 태풍예보·연구 업무의 적정성
- 용역, 유지보수 등 예산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 센터 보안 및 관리업무 적정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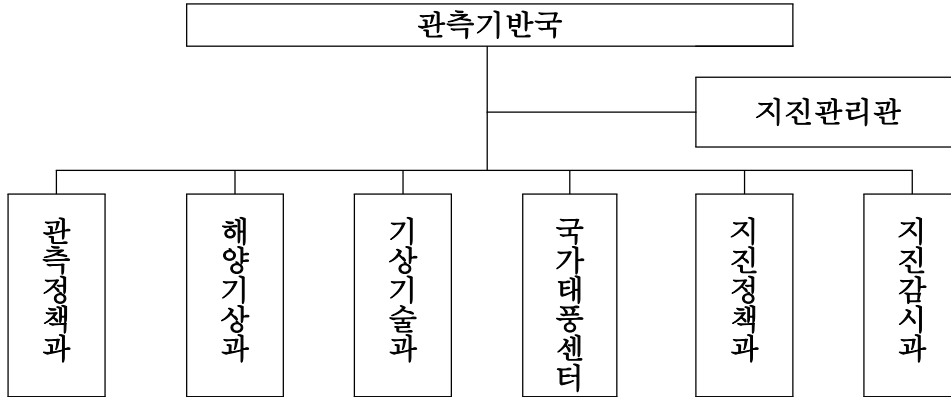
5. 감사대상기관 : 국가태풍센터

6.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3.12. 4.(수)~12. 6.(금)(3일간)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2명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나. 정·현원(2013년 12월 현재)

(단위: 명)

구 분	4급	5급	6급 (연구사)	7급	청원경찰	계
정 원	1	4	6(3)	3	3	17
현 원	1	4	6(3)	3	3	17

* 위촉연구원 : 17명

2. 주요기능

- 태풍분석·예보업무에 관한사항
- 태풍기술개발에 관한사항
- 태풍에 관한연구
- 보안 및 시설관리에 관한사항

3.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2 예산(A)	'13 예산(B)	증감(B-A)	증가율(%)
합 계	730	1,795	1,065	8.9
◦ 국가태풍센터 운영	730	795	65	8.9
◦ 예보기술지원및활용연구(R&D) - 태풍 단·장기 예측기술개발	-	1,000	1,000	순증

Ⅲ 감사결과

1. 총 평

2008년 개소한 국가태풍센터는 태풍에 대한 분석, 예보 및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중으로 태풍 전·후 열대저압부 시범예보(2013.6.1.)를 통한 태풍 조기경보체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태풍기술올림픽인 제8차 WMO 국제태풍워크숍(IWTC)¹⁾(‘14.12.1~10, 제주)를 유치하고 태풍센터·미·일·중 간 국제 핫라인 구축(2013.5월) 등을 통한 태풍업무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태풍분야 최고 권위의 ‘킨타나 상’을 수상하는 등 태풍업무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국가태풍센터를 국가 중요보안 시설로 지정(‘14.1월 예정)하여 보다 센터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보안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위탁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계약관리를 소홀히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관리업무가 미흡한 사례 등이 있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기상청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상여금 지급 행태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명절휴가비 및 복지포인트에 대한 집행기준이 불합리한 일부 기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 주요 문제점

□ 위탁 연구용역사업 계약서류 검토 소홀

- ‘11~’13년 기간 동안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10개 위탁 연구용역계약의 제출받아 검토하지 않은 계약서류가 산출내역서 7건, 선금 사용내역서 1건, 하도급승인 1건 등 7개 용역사업에서 계약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음.

1) IWTC(International Workshop on Tropical Cyclones) : WWRP(World Weather Research Programme) 및 TCP(Tropical Cyclone Programme)가 매 4년마다 주관하는 WMO의 주요 워크숍 시리즈 중 하나임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

- 국가태풍센터에서는 행정보조 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2012. 7. 16. 수립하고 채용 공고문에 ‘응시연령 제한없음’,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등의 응시자격을 포함시켰으나, 원서를 접수한 9명 모두 응시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 중 ○○○은 자격 및 어학사항 부족이라는 임의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정당한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 2013. 3. 8. 태풍 장·단기 예측기술개발을 위한 전산운영 업무지원을 위해 채용한 ㉠㉠㉠은 담당업무와 무관한 공용차량 관리, 청사 및 연구지원동 시설물 관리 및 관리비 정산·납부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채용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하고 있었음.

□ 국가태풍센터 망분리 추진 부적정

- 국가태풍센터에서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료통합의 문제점으로 태풍 분석자료 작성이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망분리 정책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어 상기 기관을 통한 내부 주요정보의 외부 유출 및 사이버 침해위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등 지급 불합리

- 국립기상연구소 및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는 당초 명절비용을 보전하고자 하는 실비변상 성격의 명절휴가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으며, 신규채용 또는 퇴직하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보다 41명에게 17,319,98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11명에게는 3,655,390원을 적게 지급하였음.

-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하였는데도 복지포인트를 선 지급한 경우가 2건이 있었으며, 자체지침 등을 근거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42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총 1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지포인트를 기상청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맞지 않게 적용하여 집행하고 있었음.

3. 처분요구 일람표

○ 종합

구 분	경 고	주 의	시정	개선	통보	현지시정	계	모범사례
건수	-	2	-	1	1	-	4	1

○ 처분요구 일람표

번호	제 목	조치요구	관련기관
1	위탁 연구용역사업 계약서류 검토 소홀	주의	국가태풍센터
2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	주의	국가태풍센터
3	국가태풍센터 망분리 추진 부적정	통보	국가태풍센터
4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등 지급 불합리	개선	국립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 모범사례

번호	제 목	관련기관
1	발상의 전환으로 만든 '여직원 휴게실'	국가태풍센터

4. 처분요구서

주 의					
번 호	1	소 관	관측기반국	관련부서	국가태풍센터
제 목 : 위탁 연구용역사업 계약서류 검토 소홀					
<p>1. 내 용</p> <p>국가태풍센터에서는 태풍 예보 및 현업화를 위해 '11~'13년 현재 총 10개 연구용역사업을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였다.</p> <p>「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010.9.8) 제4조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는 산출내역서·사업수행계획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수요기관에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의 규정에는 선금이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p> <p>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계약체결 이후 하도급의 승인여부 결정 및 선금사용 내역을 확인할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선금 사용내역서 등에 대한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p> <p>그런데 위의 관서가 '11~'13년 기간 동안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위 10개 위탁 연구용역계약의 제출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연구용역사업 계약서류 검토 현황'과 같이 제출받아 검토하지 않은 계약서류가 산출내역서 7건, 선금 사용내역서 1건, 하도급승인 1건 등 7개 용역사업에서 계약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p>					

[표] 연구용역사업 계약서류 검토 현황(2011~ 2013년)

년도	계 약 명	계약업체	계약일자	착수계 산출내역서	선금 사용내역서	하도급 승인여부
2011	태풍분석및예보시스템 개선과 태풍예보분석도구 개발	(주)□□□□□□□□	2011.05.02	×	○	해당없음
	다중회귀방법에 의한태풍 계절예측시스템현업화	(사)●●●●●●●●	2011.05.13	×	○	해당없음
	태풍5일예보 정보제공을 위한 객관전달체계 구축	□□□□□□□□(주)	2011.05.16	×	×	해당없음
2012	통계-역학 하이브리드모델을 이용한 태풍진로유형 계절예측시스템 구축	(주)●●●●●●●●	2012.05.10	×	○	해당없음
	태풍분석및예보시스템을 이용한 태풍강도예보시스템 구축	(주)□□□□□□□□	2012.05.10	×	○	×
	태풍발생탐지기술타풍5일예보지원영상체계 개선	◇◇◇◇(주)	2012.05.11	×	○	해당없음
2013	태풍분석및예보현업개선	(주)●●●●●●●●	2013.04.04	○	○	○
	태풍강도단기에측을 위한 기법개발연구	(사)●●●●●●●●	2013.04.05	○	○	해당없음
	개도국태풍분석및예보시스템 자료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주)□□□□□□□□	2013.04.09	×	○	해당없음
	장기태풍예측기술개발연구	(사)●●●●●●●●	2013.04.11	○	○	해당없음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조치할 사항 관측기반국장은

향후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위탁 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산출내역서, 선금 사용내역서 등의 계약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관측기반국 국가태풍센터

주 의

번 호	2	소 관	관측기반국	관련부서	국가태풍센터
-----	---	-----	-------	------	--------

제 목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부적정

1. 내 용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기상청훈령 제739호) 제 10조의 규정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 등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목적을 준수하고 채용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태풍센터에서는 행정보조 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2012. 7. 16. 수립하고 채용 공고문에 ‘응시연령 제한없음’,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이상’ 등의 응시자격을 포함시켰으나, 원서를 접수한 9명 모두 응시 자격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자 중 ○○○은 자격 및 어학사항 부족이라는 임의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정당한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또한 2013. 3. 8. 태풍 장·단기 예측기술개발을 위한 전산운영 업무지원을 위해 채용한 ○○○은 담당업무와 무관한 공용차량 관리, 청사 및 연구지원동 시설물 관리 및 관리비 정산·납부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채용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하고 있었다.

2. 조치할 사항 관측기반국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채용한 인력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인력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는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관측기반국 국가태풍센터

통 보

번 호	3	소 관	관측기반국	관련부서	국가태풍센터
-----	---	-----	-------	------	--------

제 목 : 국가태풍센터 망분리 추진 부적정

1. 내 용

기상청에서는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2008.7., 제30회 국무회의) 및 2010년 정보보안관리실태 평가(2010.11., 국정원) 결과 등에 따라 내부 주요정보의 외부 유출과 업무시스템에 대한 외부로부터 사이버 침해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과 업무망 분리하는 ‘망분리’(2010.10~2011. 8.)를 추진하면서 국가태풍센터도 망분리 정책 적용기관으로 선정하고 201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기술과에서는 상기 기관에 망분리 정책을 적용·시행하기 위해 사무실 사용자 좌석에 인터넷망 접속을 위한 케이블 포설을 완료(‘11.3.) 하였으며, 인터넷망용 PC도 분배(5대, 2011.5.)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가태풍센터에서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료통합의 문제점으로 태풍 분석자료 작성이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감사일 현재(2013.12.6.)까지 망분리 정책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어 상기 기관을 통한 내부 주요정보의 외부 유출 및 사이버 침해위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2. 조치할 사항 관측기반국장은

기관 내 가용 PC를 활용하여 태풍 자료통합용 PC를 제외한 좌석에 우선적으로 망분리를 하시고 향후 추가 PC 구매 등을 통해 망분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 선

번호	4	소 관	국립기상연구소 국가기상위성센터	관련부서	연구기획운영과 위성기획과
----	---	-----	---------------------	------	------------------

제 목 :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등 지급 불합리

1. 내 용

기상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각종 연구, 사무 및 시설물관리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표 1] ‘기상청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과 같이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총 225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기상청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2013.12.12. 기준)

소속기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합계
본청	44	7	51
국립기상연구소	118	—	118
지방청	12	4	16
국가기상위성센터	27	1	28
기상레이더센터	10	—	10
항공기상청	2	—	2
합계	213	12	225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가. 기간제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불합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00호)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명절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은 ‘설날 및 추석날’로, 지급일자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19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봉액 산정 시 명절 휴가비 등이 포함되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 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때에도 상기 규정에 준해 자체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국립기상연구소 및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채용 당시 명절 휴가비 등이 월봉금액에 포함되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 하였으면서 명절휴가비로 연구원 월 보수 기본금의 120% 상당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균등분할 하여 지급하고 있다.

[표 2] 국립기상연구소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연구원 보수구성 현황

기관명	보수구성(월지급액 기준)	시행년도
국립기상연구소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7개 항목	2011
국가기상위성센터	기본급,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9개 항목	2011

그 결과 당초 명절비용을 보전하고자 하는 실비변상 성격의 명절휴가비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급되고 있으며, [별표 1] ‘공무원수당 기준 대비 명절휴가비 상이 지급 내역’과 같이 신규채용 또는 퇴직하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보다 41명에게 17,319,98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11명에게는 3,655,390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나.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 부적정

「기상청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기준」(2011, 2012년)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무기계약직과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로 지급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기관에서 복지포인트 지급일을 정할 때에는 당해연도 비정규직 채용일정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립기상연구소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등 2개 기관에서는 [별표 2] ‘지급기준과 상이한 복지포인트 지급 내역’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하였는데도 복지포인트를 선지급한 경우가 2건이 있었으며,

국립기상연구소는 「국립기상연구소 연구원(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에 지급일이 매년 7월 31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로, 국가기상위성센터는 2012년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42명에 대한 복지포인트 총 1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복지포인트를 기상청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맞지 않게 적용하여 집행하고 있었다.

2. 조치할 사항 국립기상연구소장과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①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 자체기준 마련 등을 통하여 수당 본래 목적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시고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사전에 지급되지 않도록 수당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공무원수당 기준 대비 명절휴가비 상이 지급 내역

대상기관	해당년도	성명	계약기간	기준단가 (공무원 지급기준)	정당지급액 (A)	실지급액 (B)	차액 (A-B)
국립기상연구소	2012	○○○	****. **.*~****. **.*	786,120	786,120	515,100	-271,020
	2013	○○○	****. **.*~****. **.*	1,290,480	2,580,960	1,935,720	-645,240
소계				2,076,600	3,367,080	2,450,820	-916,260
국가기상위성센터	2012	○○○	****. **.*~****. **.*	786,120	786,120	554,650	-231,470
		○○○	****. **.*~****. **.*	699,120	699,120	431,120	-268,000
	2013	○○○	****. **.*~****. **.*	892,980	892,980	446,490	-446,490
		○○○	****. **.*~****. **.*	722,100	722,100	306,690	-415,410
		○○○	****. **.*~****. **.*	722,100	722,100	361,050	-361,050
		○○○	****. **.*~****. **.*	811,980	811,980	523,270	-288,710
		○○○	****. **.*~****. **.*	811,980	1,623,960	1,353,300	-270,660
		○○○	****. **.*~****. **.*	722,100	722,100	465,350	-256,750
○○○	****. **.*~****. **.*	722,100	1,444,200	1,243,610	-200,590		
소계				6,890,580	8,424,660	5,685,530	-2,739,130
과소지급액 합계							-3,655,390
국립기상연구소	2012	○○○	****. **.*~****. **.*	786,120	786,120	917,140	131,020
		○○○	****. **.*~****. **.*	786,120	786,120	1,048,160	262,040
		○○○	****. **.*~****. **.*	786,120	786,120	1,048,160	262,040
		○○○	****. **.*~****. **.*	937,140	937,140	1,249,520	312,380
		○○○	****. **.*~****. **.*	992,640	992,640	1,323,520	330,880
		○○○	****. **.*~****. **.*]	786,120	786,120	1,179,180	393,060
		○○○	****. **.*~****. **.*	786,120	786,120	1,179,180	393,060
		○○○	****. **.*~****. **.*	786,120	786,120	1,179,180	393,060
		○○○	****. **.*~****. **.*	1,191,000	1,191,000	1,588,000	397,000
		○○○	****. **.*~****. **.*	1,249,380	1,249,380	1,665,840	416,460
		○○○	****. **.*~****. **.*	699,120	699,120	1,165,200	466,080
		○○○	****. **.*~****. **.*	786,120	786,120	1,310,200	524,080
		○○○	****. **.*~****. **.*	786,120	786,120	1,310,200	524,080
		○○○	****. **.*~****. **.*	786,120	786,120	1,441,220	655,100
	2013	○○○	****. **.*~****. **.*	722,100	722,100	1,203,500	481,400
		○○○	****. **.*~****. **.*	722,100	722,100	1,203,500	481,400
		○○○	****. **.*~****. **.*	722,100	722,100	1,203,500	481,400

		○○○	****, **, **~****, **, **	811,980	811,980	1,217,900	405,920
		○○○	****, **, **~****, **, **	967,980	967,980	1,290,640	322,660
		○○○	****, **, **~****, **, **	722,100	722,100	962,800	240,700
		○○○	****, **, **~****, **, **	722,100	722,100	1,083,150	361,050
		○○○	****, **, **~****, **, **	811,980	811,980	1,353,300	541,320
		○○○	****, **, **~****, **, **	811,980	811,980	1,353,300	541,320
		○○○	****, **, **~****, **, **	811,980	811,980	1,353,300	541,320
		○○○	****, **, **~****, **, **	722,100	722,100	1,323,850	601,750
		○○○	****, **, **~****, **, **	910,620	910,620	1,517,700	607,080
		○○○	****, **, **~****, **, **	811,980	811,980	1,488,630	676,650
소계				22,415,460	22,415,460	34,159,770	11,744,310
국가기상위성센터	2012	○○○	****, **, **~****, **, **	699,120	699,120	815,640	116,520
		○○○	****, **, **~****, **, **	699,120	699,120	881,660	182,540
		○○○	****, **, **~****, **, **	881,640	0	331,800	331,800
		○○○	****, **, **~****, **, **	786,120	786,120	1,166,070	379,950
		○○○	****, **, **~****, **, **	699,120	699,120	1,281,720	582,600
		○○○	****, **, **~****, **, **	699,120	699,120	1,281,720	582,600
		○○○	****, **, **~****, **, **	786,120	786,120	1,441,220	655,100
	2013	○○○	****, **, **~****, **, **	864,540	864,540	1,584,990	720,450
		○○○	****, **, **~****, **, **	811,980	811,980	906,710	94,730
		○○○	****, **, **~****, **, **	722,100	722,100	970,820	248,720
		○○○	****, **, **~****, **, **	811,980	811,980	1,091,660	279,680
		○○○	****, **, **~****, **, **	811,980	811,980	1,091,660	279,680
		○○○	****, **, **~****, **, **	811,980	811,980	1,372,630	560,650
		○○○	****, **, **~****, **, **	811,980	811,980	1,372,630	560,650
소계				10,896,900	10,015,260	15,590,930	5,575,670
과다지급액 합계							17,319,980

*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지급기준과 상이한 복지포인트 지급 내역

소속기관	해당년도	성명	계약기간	지급일자	선지급금(원)
국립기상연구소	2012	○○○	****. **.*~****. **.*	2012.07.31	300,000
		○○○	****. **.*~****. **.*	2012.07.31	300,000
합 계		2명			600,000

소속기관	해당년도	성명	계약기간	미지급금(원)
국가기상위성센터	2012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2013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국립기상연구소	2012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2013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	****. **.*~****. **.*	300,000
합 계		42명		11,700,000

*감사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모 범 사 례

번호 1 기관명 국가대풍센터

제 목 : 발상의 전환으로 만든 ‘여직원 휴게실’

1. 추진배경

-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신규채용 등으로 인해 센터 내 여직원 비율 증가 및 임산부 직원을 위한 독립적인 휴게 공간 필요성 대두

※ 여직원 근무비율: ‘12년 7명(총 19명), 36% → ‘13년 16명(총 30명), 53% (17%증가)

2. 추진내용

- 도서실 공간을 재배치 활용으로 “공간의 재발견”
 - 무분별하게 배치된 도서·기록물을 분야·년도별 분류, 훼손된 서적 정리·폐기
 - 도서실 내 책장, 책상 등 사무가구 재배치
 - 효율적인 기록물 보관 및 휴게 공간 확보
- 폐기물품 재활용 및 기증으로 “안락한 장소” 로 한층 높이기
 - 체력단련실 바닥공사 시 남은 쿠션블록을 활용하여 휴게실 바닥재 사용, 단열효과
 - 개인 소장 교양 레저용 서적 등 기증으로 물품 구매비용 절감

3. 주요성과

- 기존 공간 및 물품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
 - 신규 공간 마련 시 예상 소요비용 6,300천원 → 재활용 700천원(5,600천원 절감)

신규 마련 시(예시)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박스 1개 기준: 5,000천원 - 바닥공사(쿠션, 합판 등): 1,000천원 - 기존 폐기물(쿠션블록)처: 3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공사: 700천원

- 도서·문서의 일체정리로 효율적인 자료 관리에 기여
- 출산장려 정책과 부응하는 임산부, 육아 여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

